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03호 2012. 8. 2.(목)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1호(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2호(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3호(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4호(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5호(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67호(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2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02호(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1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3호(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34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4호(인천광역시연수구용역업무관리규정 폐지규정) 37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5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39

【예 규】

-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 제6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등 영업의 시설기준 운영지침 폐지지침) 46
-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 제65호(인천광역시연수구깨끗하고친절한음식점선정및운영관리지침 폐지지침) 48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일부개정2011.02.09)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제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 개정 -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근거 마련 ☞ 인상(24.2%)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정부구매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지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 전표 등에 따라 실비 정산 (다만,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을 선 지급 후 사후 정산) ☞ 할인정액 지급 : 여비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를 지급할 경우 실비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 가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

광역시연수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제1호 다목, 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 가목”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보며,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지명위원회의 근거 법률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지명위원회 구성,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변경 ○ 지명위원회 근거 법률 변경(제1조) -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 ⇒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5조 ○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제2조제2항) - 문화공보실장 ⇒ 위원 중 호선 ○ 지명위원회 서기·간사 변경(제10조) - 간사와 서기는 구청장이 임명 ⇒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됨.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문화시설(도서관 등) 확충을 위한 재원 예치 및 사용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별 운영, 원금 및 이자관리 규정의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련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축제운영기획단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효율적인 축제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변경(제15조제2항 및 제3항) ○ 미술장식품 심의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업무 조항 삭제(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축제운영기획단 구성 변경(제41조제2항) -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규정 삭제 ○ 미술위원회 규정 삭제(제45조, 제47조, 제48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시설(도서관 등) 확충을 위해 마련된 재원은 조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5장(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를 “기획단은”으로

한다.

제45조, 제47조, 제48조 중 “위원회, 미술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개정 이유 ○ 연수구립풍물단 예술감독이 지휘자, 상쇠, 예술감독으로 혼용 표기되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어 직책명을 예술감독으로 통일하고자 함 ○ 직책명 중 지휘자는 구립관악단과 구립여성합창단에, 예술감독은 구립풍물단에 적용함으로서 예술단체에 적절한 직책명을 사용하고 그 밖에 표기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술단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예술단체별 단원의 종류와 정원, 직책 유무에 따른 단원 구분을 위한 내용 개정(제3조, 제4조제2항) ○ 구립예술단체 직책명(지휘자) 변경(제4조제1항) - “지휘자” 를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 으로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3호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원은 별표1과”를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휘자는”을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이하 “지휘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원”을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으로 한다.

별표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술단체별 단원의 종류 및 정원(제3조 관련)

1. 관악단

구 분	정 원	비 고
계	40명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악장	1명	
총무	1명	
악기악보계	1명	
출연단원	35명	

2. 여성합창단

구 분	정 원	비 고
계	50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출연단원	48명	

3. 풍물단

구 분	정 원	비 고
계	15명	
예술감독	1명	
출연단원	14명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및 공정한 민원처리 강화와 관련하여 민원수수료의 수입증지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른 세부 실천이행 사항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 자치단체 통일규격을 적용한 전자수입증지사용 및 증지 규격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 불편 해소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화(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 제증명서(3종) 기능 개선 - 전자수입증지(3종) :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용 과세 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관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마련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능력 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이나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신설(제5조) -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100분의 50을 감면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변경(제10조) -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로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를 위 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지정하는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10.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100분의 50을 감면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 수탁기관 선정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함은 물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제5조 제1항) - 수탁기관 선정시 검토사항에 있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 ○ 민간위탁분야가 점점 확대 운영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참여기회 증대 (제6조 제2항)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 삭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7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중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3항으로 제7항을 제4항으로 제8항을 제5항으로 제9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구민의 통합과 발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안 마련 - 보훈예우수당 : 월 3만원 이내 (제6조) - 사망위로금 : 20만원 (제11조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6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자·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및 소개

6.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7. 국가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매월 3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수당의 신청)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2.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하되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5.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제12조(수당의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방법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② 무상으로 지급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국가보훈대상자 1인당 매월 20ℓ 3매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자·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확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종 류	은행명	지급계좌
					수 당		
					사망위로금		

[별지 제3호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국가보훈 대 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 일자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국가보훈 대상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주, 예금 계좌번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신청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2011.11.29)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연수구립풍물단 예술감독이 지휘자, 상쇠, 예술감독으로 혼용 표기되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어 직책명을 예술감독으로 통일하고자 함. ○ 직책명 중 지휘자는 구립관악단과 구립여성합창단에, 예술감독은 구립풍물단에 적용함으로써 예술단체에 적절한 직책명을 사용하고자 함. ○ 그 밖에 표기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술단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전형위원회 전형위원 변경(제4조제1항)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함. ○ 구립예술단체 직책명(지휘자) 변경(제4조제2항) - “지휘자”를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으로 변경 ○ 객원연주자 명칭 변경(제8조제2항) - “객원연주자”를 “객원출연자”로 함. ○ 직책수당을 받는 단원 변경(제8조제4항) - “관악단원”을 “단원”으로 함.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02호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휘자”를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이하 “지휘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객원연주자”를 “객원출연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악단원”을 “단원”으로 한다.

별표2의 구분란 중 “객원연주자”를 “객원출연자”로 한다.

별표3의 품물단 직책란 중 “감독”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공공도서관인 「연수청학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정수 조정 ○ 보건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직종변경 ☐ 주요 내용 ○ 도서관리 시스템 운영 요원 부서 변경 - 교육지원과△1 ⇒ 연수청학도서관 1 ○ 보건소 무기계약직 직종 변경 (단순잡역조무인부 ⇒ 보건행정보조원) - 민원실, 한방진료실, 검사실 근무자에 대한 직종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3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수표

1. 총괄

구 분	총 계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124	10	12	6	77	19

2. 부서별·직종별 현황

부 서 별	계	행 정 보 조 원										단 순 노 무 원					도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소계	국공유 재산관리	의료급여 사별관리	보육상당 실상당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GIS DB 입력원	사서 보조	도서시스 템운영	보건행정 보조원	소계	시설물·채널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직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 현장인부	단순직역 조무인부				
총 계	124	10	1	1	1	1	1	1	1	3	12	4	1	4	3	6	77	19	
본 청	117	5	1	1	1	1	1				10	4	1	4	1	6	77	19	
총 무 과	19																	19	
재무회계과	1	1	1																
정보통신과	1										1				1				
사회복지과	1	1		1															
가정복지과	1	1			1														
일자리창출과	1					1													
청소행정과	77																77		
환경보건과	1										1	1							
건설방재과	9	1									2	1	1			6			
공원녹지과	2										2	2							
도시계획과	4										4			4					
직 속 기 관	5	3								3	2				2				
보 건 소	5	3								3	2				2				
사 업 소	2	2						1	1										
연수청학도서관	2	2						1	1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업무관리규정 폐지규정	☐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2012. 6. 4)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인천광역시연수구용역업무관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용역업무관리규정」은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용역업무관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3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용역업무관리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용역업무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 제정이유 ○ 공무원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처벌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해소 및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 내부징계와 더불어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명시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 공금횡령 범죄에 대한 고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 고발사건을 목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3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대상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과의 각 부서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이하 “감사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금품수수 관련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천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혐의자가 혐의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 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제6조 제3항 관련)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및 공소제기 결과 등	기타참고사항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등 영업의 시설 기준 운영지침 폐지 지침	☐ 폐지 이유 ○ 공사현장내 식당(일반음식점)에 한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 시설기준 공통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공사현장내 일반음식점 신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대형 공사현장의 경우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므로, ○ 비산먼지, 배수관리 등 공사장내 취약한 환경과 더불어 취약한 위생관리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점이 많아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등 영업의 시설기준 운영지침은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등 영업의 시설기준 운영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6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등 영업의 시설기준 운영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등 영업의 시설기준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깨끗하고친절한 음식점선정및운영 관리지침 폐지지침	☐ 폐지 이유 ○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추진하던 3S운동을 식품접객업소에 접목하여 추진하던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 선정 및 운영” 사업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의 지정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과 선정 절차,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지침이 필요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깨끗하고친절한음식점선정및운영지침은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깨끗하고친절한음식점선정및운영관리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8. 2.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65호

인천광역시연수구깨끗하고친절한음식점선정및운영관리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깨끗하고친절한음식점선정및운영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